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정이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2) 축산법 제2조
-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 5) 동물보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T/F팀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체간 협력) 시장은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시장은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가축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3.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8.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
9.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지역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 및 축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 축산업 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유통축산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에 주소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선도농업인
3.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대표
4.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축산분야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알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

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크로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소관 실·과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입 안 자	과 장	유 영 식
	담 당	손 이 석
	담 당 자	전 영 기 (480-5832)